의안 번호	1143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승엽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승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3

발의연월일 : 2025. 10. 14.

발 의 의 원 : 박승엽・강창석・구점득・김미나・김영록 안상우・정길상・최정훈・황점복 의원(9명)

1. 제안이유

○ 창원시 파크골프장 전 구장 유료화로 소규모(9홀 이하) 및 시설 상태가 미흡한 구장에도 동일 요금이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소규모 또는 시설 미흡 구장에는 요금을 무료로 전환하고자 함.

○ 이용료 감면 나이 하향 조정, 하절기 운영시간 연장, 연회비 1회 납부를 통한 모든 파크골프장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파크골프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구 구장별로 달리 정한 매주 1일의 특정 요일을 휴장하도록 개정함(안 제4조)

나. 하절기 기간 및 이용시간 등을 정비함(안 제5조)

다. 연회원 이용료 1회 납부 시 모든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9홀 이하 구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하는 등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7조)

마. 단체 이용료에 관한 적용례와 연회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바. 연회원 및 단체의 파크골프장 이용료를 수정함(안 별표 2)

사. 이용료 감면 연령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신·구별표대비표

다. 관계 법령

라. 현행 조례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개수”를 “잔디 보호”로 한다.

1. 창원, 마산, 진해 구장별로 달리 정한 매주 1일의 특정 요일

제5조제1항제1호 중 “10월)”을 “9월)”로, “18:00”을 “19:0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1월”을 “10월”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이용 신청)”을 “(이용 신청 및 이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회원 이용자는”을 “연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입한 연회원은 별표 1에 따른 파크골프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9홀 이하 구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③ 시설이 미흡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구장은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입장 및 이용의 제한)”을 “(이용 및 입장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파크골프장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연회원 이용자에 대하여 일부 파크골프장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파크골프장 단체 이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파크골프장의 이용을 신청하는 단체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내고 파크골프장별로 가입한 연회원은 이 조례에 따른 연회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원으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납부한 연회원 이용료 중 감경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며, 반환 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파크골프장 이용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일일 이용자	연회원	단 체
관내	2,000	50,000	60,000
관외	5,000	-	200,000

1. “일일 이용자”란 매표소에서 발행하는 일일 입장권을 구매하여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관내·관외 일일 이용자의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관내 일일 이용자: 주민등록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경우
   나. 관외 일일 이용자: 주민등록상 창원시 외에 주소를 둔 경우

2.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파크골프장을 함께 이용하려는 40명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단체는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시간 내에서 1회당 9홀을 3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관내·관외 단체의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관내 단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창원시에 소재지를 둔 법인·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2) 1) 외의 경우로서 단체의 구성원 중 80퍼센트 이상이 주민등록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인 경우
   나. 관외 단체: 가목 외의 법인·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3]

이용료의 감면(제11조 관련)

구 분		비고
전액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창원시체육회 또는 창원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가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50퍼센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창원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65세 이상 경로자	

참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휴장일) ① 파크골프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수요일(다만,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파크골프장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나.·다. (생 략) ② (생 략)	제4조(휴장일) ① ----------. 1. 창원, 마산, 진해 구장별로 달리 정한 매주 1일의 특정 요일 2. (현행과 같음) 3. ---------- 가. ---------- 잔디 보호---------- 나.·다.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① 파크골프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하계(4월 ~ 10월): 6:00 ~ 18:00 2. 동계(11월 ~ 3월): 7:00 ~ 17:00 ② ~ ④ (생 략)	제5조(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① ----------. 1. -------- 9월)-------- 19:00 2. ---10월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이용 신청) ① (생 략) ② 연회원 이용자는 별지 서식의 파크골프장 연회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이용 신청 및 이용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연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가입한 연회원은 별표 1에 따른 파크골프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생 략)	제7조(이용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9홀 이하 구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신 설>	③ 시설이 미흡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구장은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
제10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파크골프장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연회원 이용자에 대하여 일부 파크골프장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참 고

신 · 구별표대비표

현 행

■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파크골프장 이용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일일 이용자	연회원	단 체
관내	2,000	100,000	120,000
관외	5,000	-	200,000

1. "일일 이용자"란 매표소에서 발행하는 일일 입장권을 구매하여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관내·관외 일일 이용자의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관내 일일 이용자: 주민등록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경우
   나. 관외 일일 이용자: 주민등록상 창원시 외에 주소를 둔 경우

2.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파크골프장을 함께 이용하려는 40명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단체는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시간 내에서 1회당 9홀을 3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관내·관외 단체의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관내 단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창원시에 소재지를 둔 법인·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2) 1) 외의 경우로서 단체의 구성원 중 80퍼센트 이상이 주민등록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인 경우
   나. 관외 단체: 가목 외의 법인·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3]

이용료의 감면(제11조 관련)

구 분	비고
전액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창원시체육회 또는 창원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가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50퍼센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창원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70세 이상 경로자	

개 정 안

■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파크골프장 이용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일일 이용자	연회원	단 체
관내	2,000	50,000	60,000
관외	5,000	-	200,000

1. "일일 이용자"란 매표소에서 발행하는 일일 입장권을 구매하여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관내·관외 일일 이용자의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관내 일일 이용자: 주민등록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경우
   나. 관외 일일 이용자: 주민등록상 창원시 외에 주소를 둔 경우

2.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파크골프장을 함께 이용하려는 40명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단체는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시간 내에서 1회당 9홀을 3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관내·관외 단체의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관내 단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창원시에 소재지를 둔 법인·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2) 1) 외의 경우로서 단체의 구성원 중 80퍼센트 이상이 주민등록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인 경우
   나. 관외 단체: 가목 외의 법인·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3]

이용료의 감면(제11조 관련)

구 분	비고
전액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창원시체육회 또는 창원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가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50퍼센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창원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65세 이상 경로자	

참고 **관계 법령**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 **현행 조례**

■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창원시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크골프장”이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연회원”이란 1년 단위의 회원으로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파크골프장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휴장일) ① 파크골프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수요일(다만,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파크골프장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행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장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① 파크골프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하계(4월 ~ 10월): 6:00 ~ 18:00
2. 동계(11월 ~ 3월): 7:00 ~ 17:00

② 시장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파크골프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오전: 파크골프장 운영 시작시간부터 12시까지
2. 오후: 13시부터 파크골프장 운영 종료시간까지

④ 파크골프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오전 또는 오후 중에서 어느 하나만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 신청) ①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이

발행하는 입장권을 구매하거나 연회원으로 가입하여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연회원 이용자는 별지 서식의 파크골프장 연회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이용료) 파크골프장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이용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이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용자에게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이용자에 우선해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창원시체육회 또는 창원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각종 훈련, 체육경기 및 행사

제9조(이용자의 시설물 및 설비)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용기간 내 시설물 등의 설치 및 철거를 완료해야 한다.

제10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파크골프장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이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
4. 파크골프장을 독점하여 이용하거나 영리 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6. 제8조제2항에 따라 파크골프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파크골프장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취사·음주 행위를 하였거나 한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파크골프장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과 그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감면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④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용료 납부 시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이용 시작 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2. 연회원이 이용 중에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취소 신청한 월을 제외하고 월 단위로 계산. 이 경우 십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3. 파크골프장 일일 이용자가 이용 시작 중에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 이용료 미반환

제13조(파크골프장의 관리) ① 시장은 파크골프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파크골프장의 규모에 맞게 질서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③ 질서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파크골프장 내 이용자의 경기질서 유지 및 주차장 교통질서 계도
2. 회원 가입 및 일일 이용권 부착 여부 확인
3. 시설물 안전점검 등

④ 제2항에 따른 질서관리요원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파크골프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유재산에 설치된 파크골프장: 창원시설공단
2. 공유재산에 설치된 파크골프장: 창원시설공단 또는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제15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파크골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운영 규정) 파크골프장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서식]

창원시 파크골프장 연회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세 부 내 용	이용기간		
	감면신청사유		
납부금액	금 원	납부확인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파크골프장 연회원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사실 증명 서류(감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창원시 파크골프장 연회원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연회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민감정보(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등 여부) 그 밖에 별도로 정하여 제출한 사항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연회원 스티커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아용은 1일당 오전 또는 오후 중에서 1회로 제한합니다.
2. 연회원 스티커 분실 시에는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3. 파크골프장 시설 공사, 자연재해 등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파크골프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파크골프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검토	→	통지
신청인		창원시		창원시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

창원시 파크골프장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연번	명 칭	규모	위 치
1	대산면 파크골프장	90홀	의창구 대산면 북부리 195-3
2	북면장애인 파크골프장	18홀	의창구 북면 외산리 42-2
3	풍호파크골프장	9홀	진해구 풍호동 18-14
4	장천파크골프장	18홀	진해구 장천동 산 1-300
5	광석골파크골프장	9홀	진해구 장천동 21번지 (진해드림파크 내)
6	용원파크골프장	18홀	진해구 용원동 1335번지, 1347-7번지
7	가포파크골프장	9홀	마산합포구 가포동 668
8	호계파크골프장	18홀	마산회원구 호계리 503
9	소사파크골프장	18홀	진해구 소사동 55-4

파크골프장 이용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일일 이용자	연회원	단 체
관내	2,000	100,000	120,000
관외	5,000	-	200,000

1. “일일 이용자”란 매표소에서 발행하는 일일 입장권을 구매하여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관내·관외 일일 이용자의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관내 일일 이용자: 주민등록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경우
   나. 관외 일일 이용자: 주민등록상 창원시 외에 주소를 둔 경우

2.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파크골프장을 함께 이용하려는 40명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단체는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시간 내에서 1회당 9홀을 3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관내·관외 단체의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관내 단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창원시에 소재지를 둔 법인·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2) 1) 외의 경우로서 단체의 구성원 중 80퍼센트 이상이 주민등록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인 경우
   나. 관외 단체: 가목 외의 법인·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3]

이용료의 감면(제11조 관련)

구 분		비고
전액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창원시체육회 또는 창원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가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50퍼센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창원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70세 이상 경로자	

"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

창 원 시

수신 창원시의회의장(의사입법담당관)
(경유)
제목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관련 검토의견서 송부(박승엽 의원)

의사입법담당관-6163(2025. 9. 19.)호와 관련하여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 조례 제·개정 개요

조 례 안	발 의 자	부 서 검 토 의 견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 승 엽 의 원	○ 검토부서 : 체육진흥과 ○ 관련법령 저촉 여부 및 종합의견 : 붙임 검토보고서 참조

붙임 1. 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보고 1부.
2. 붙임 자료 각 1부. 끝.

창 원 시 장

주무관	김아현	주무관	이고은	정책기획관	전결 2025. 10. 14. 김태호
협조자					

시행 정책기획관-14070 (2025. 10. 14.) 접수 의사입법담당관-6600 (2025. 10. 14.)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정책기획관 (용호동) / http://www.changwon.go.kr
전화번호 055-225-2264 팩스번호 055-225-4702 / kah9978@korea.kr / 비공개(5)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박승엽·백승규 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

◈ **박승엽** 의원·**백승규** 의원 발의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발 의 자) 박승엽 의원(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백승규 의원(건설해양농림위원회)

○ (상정시기) 2025년 10월 임시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 분	제안이유	주요내용
박승엽 의원	전 구장 동일 요금 적용 형평성 문제, 이용자 편의와 접근성 향상	가. 휴장일 설날·추석 당일로 수정하고 지역구 구장별 휴장일 달리 적용 나. 하절기 운영시간 19시로 연장 다. 연회원 관내 전 구장 무료 이용, 연회원(5만원)·단체(6만원) 이용료 인하 라. 소규모·시설 미흡 구장 무료 전환 마. 감면연령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백승규 의원	유료화 시행 이후 이용자 의견 반영 요금 및 운영 시간 조정	가. 휴장일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삭제 나. 하절기·동절기 운영 종료시간 각각 1시간 연장 다. 연회원(5만원)·단체(8만원) 이용료 인하 라. 감면연령 하향 조정(65세 이상) 및 이용료 면제(75세 이상) 조항 신설 마.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 기 납부자 환불 또는 기간 연장 조치 마련

2 부서 검토결과

○ (검토의견) 조례(안) **일부 수용**

- 불수용 : **제4조(휴장일), 제7조·별표2(연회원 이용료)**, 제14조(관리운영위탁)
- 수 용 : 제5조(운영시간), 제6조(연회원 혜택), **제7조·별표 2(단체이용료), 제11조(감면연령)**

○ (수용사유) 창원시 파크골프장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타 지자체 운영을 참고하여 **운영시간 연장, 단체이용료 감면 및 이용료 감면 연령** 등 조정

3 개정(안) 주요내용<요약>

구 분	현행 조례	박승엽 의원(안) (2025. 9. 3.)	백승규 의원(안) (2025. 9. 5.)	부서검토 의견
1.휴장일 (제4조)	1항 (휴장일) 1.매주 수요일 **2.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3. 개수, 보수 또는 시설물 점검 등	1항 (휴장일) **2. 1월1일, 설·추석 당일** **3. 잔디보호 추가** **3항 (신설)지역별 정기 휴무일 달리 적용**	1항 (휴장일) **2.삭제**	1항 (휴장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장 가능** **2. 현행유지** **3. 잔디보호 추가** **4.(신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 휴장 가능**
2.운영시간 (제5조)	하절기 : 6:00 (4월~10월) ~ 18:00	하절기 : 6:00 (4월~**9**월) ~**19:00**	하절기 : 6:00 (4월~10월) ~**19:00**	하절기 : 6:00 (4월~**9**월) ~**19:00**
	동절기 : 7:00 (11월~3월) ~ 17:00	동절기 : 7:00 (**10**월~3월) ~17:00	동절기 : 7:00 (11월~3월) ~**18:00**	동절기 : 7:00 (**10**월~3월) ~17:00
3.연회원 혜택 (제6조)	없음.	**(신설) 관내 전 구장 무료 이용**	-	**(신설) 관내 전 구장 무료 이용**
4.연회원 이용료 (제7조·별표2)	**100,000**원	**50,000원**	**50,000원**	**100,000원 (현행유지)**
5.단체 이용료 (제7조·별표2)	**120,000**원	**60,000원**	**80,000원**	**80,000원**
6.무료시설 (제7조)	없음.	**(신설)소규모(9홀) +시설미흡구장**	-	**(신설)소규모(9홀) +시설미흡구장**
7.감면연령 (50%) (제11조·별표3)	**70세 이상**	**65세 이상**	**·65세 이상→50%감면** **·75세 이상→전액면제**	**65세 이상**
8.관리·운영 위탁 (제14조)	1.국유재산: 창원시설공단 2.공유재산: 창원시설공단 또는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현행유지**	1.현행유지 2.공유재산: **파크골프협회 추가**	**현행유지**
9.시행시기 <부칙>	-	**즉시시행**	공포일로부터 **3개월**	1. 제7조 연회원 이용료 **→ 2026. 7. 5.** 2. 연회원 이용료 이외 단체이용료 감면연령 등 **→ 2026. 1. 1.**

4 항목별 세부 검토내용

1. (제4조) 휴장일 ▸ (불수용) 현행유지

○ (개 정 안)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등 법정공휴일에 따른 휴무일 축소 또는 삭제

현행 조례	개정(안)		부서검토(안)
	박승엽(안)	백승규(안)	
1 (휴장일) 파크골프장의 휴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항 (휴장일)	1항 (휴무일)	1항 (휴장일) 파크골프장의 휴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을 개장할 수 있다.
1. 매주 수요일(다만,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1. ~ 2호. 현행유지
2.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2.1월1일, 설·추석 당일	2.삭제	1. 매주 수요일 2.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3. 일부수정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개수, 보수 또는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1호에따른재난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있는 경우 다. 그밖에 시장이 행사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호가목 수정 가. 잔디보호 추가		가. 개보수, 점검 또는 잔디보호가 필요한 경우 나. 현행유지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체육 관련 경기나 행사 의 준비 또는 개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창원시체육회 또는 창원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관련 경기나 행사의 준비 또는 개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신설)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시장은 제1항제3호에따라 휴장하는 경우 해당 휴장일 7일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3항(신설) 창원, 마산, 진해 구장 정기 휴장일 달리 적용		2항 현행유지

○ (검토결과)

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공휴일 보장 위한 휴장일 규정 → **현행유지**

1 [현행유지]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 현행조례 휴장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규정된 법정휴일 보장 위한 조치임.
- 동조항 단서 규정에 따라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자와의 서면 합의 없는 조례 개정으로** 법정휴일 근로 강제 시, **상위법 위반 소지 및 상위법을 근거로 한 근로자들의 정당한 법정휴일 보장 요구**에 대한 **불수용 근거 부족**
-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정휴일 축소 등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함.

2 [추가・보완] 잔디 보호기간 및 각종 체육대회 개최 등 휴장 사유 추가

- 현행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휴장을 실시하고 있는 잔디 생육기간(3~4월) 및 국가・지자체・체육회 등 각종 체육대회 등 추가, 명문화

3 [신설] 포괄적인 휴장일 예외조항 신설

- 휴장일 규정에도 불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포괄적 예외규정 신설, 명문화

나. 정기휴장일 지역별 분산 → **현행유지**

- 지역별 규모・이용객 차이[대산(1,500명), 호계(200명), 용원(150명), 소사(150명)] 큼으로 정기 휴무일 달리 적용에 따른 인원 분산 효과가 크지 않고, 마산・진해지역 소규모 구장 적정 수용인원 초과 시 안전사고 위험성 증대 우려

※ [참고] 근로기준법 관련규정 발췌

[제55조(휴일)]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제2항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각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 대체공휴일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제5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조) 운영시간 탄력적 운영 ▸ (일부수용) 하절기 운영시간 1시간 연장

○ (개 정 안) 하절기 운영시간 1시간 연장

현행 조례	개정(안)	
	박승엽 의원(안)	백승규 의원(안)
(하절기:4월~**10월**) 6:00~**18:00** (동절기:11월~**3월**) 7:00~**17:00**	(하절기:4월~**9월**) 6:00~**19:00** (동절기:10월~**3월**) 7:00~17:00	(하절기:4월~10월) 6:00~**19:00** (동절기:11월~3월) 7:00~**18:00**

○ (검토결과) 하절기·동절기 운영 월수 조정 + 하절기 운영시간 1시간 연장

- 현재 폭염특보에 따른 7 ~ 9월 운영시간 연장 운영 중 (18시 → 19시)
- 운영시간 연장 시 일몰시간 및 조명설치 불가(대산·북면) 이용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하절기·동절기 운영 기간 조정(하절기 10월 → 9월), 동절기 11월 → 10월) 필요
- 창원(대산면)지역 월별 평균 일몰시간 및 이용객 안전 고려하여 하절기 운영시간 조정

※ 창원 의창구 대산면 지역 2024년 매월 1일자 기준 (자료출처: 한국천문연구원)

구분	동절기			하절기						동절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출	07:33	07:24	06:54	06:11	05:33	05:11	05:13	05:33	05:57	06:19	06:46	07:15
일몰	17:23	17:52	18:19	18:46	19:10	19:34	19:44	19:29	18:52	18:09	17:30	17:12

3. (제6조) 연회원 관내 전 구장 무료이용 ▸(수용/신설) 명문화

○ (개 정 안) 연회원 관내 전 구장 무료 이용 규정 신설

○ (검토결과) 현재 시행 중으로 조례 개정 시 명문 규정 신설 필요

4. (제7조 · 별표2) 연회원 이용료 감면 ▸(불수용) 현행유지(100,000원)

○ (개 정 안) 연회원 이용료 감면 : (현행) 연 100,000원 → (개정안) 연 **50,000**원

○ (타 시군 사례) 이용료 부과 조례 확인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조례 등재 시군)

- 전국 유료화 시군 59개소 중 33개 시군 연간 또는 월간 이용료 부과

구분	조사대상(시군수)			유료화 시군 연간 및 월간 이용료 부과 현황									
				시군수	연회원 이용료 부과				월 이용료				연+월 이용료미부과
	합계	유료화	무료		시군수	이용료(천원)			시군수	이용료(천원)			시군수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전국	96	59	36	59	21	50 (밀양)	350 (세종)	132	19	10 (포항)	100 (김제)	44	26
경남	18	10	8	10	8	50 (밀양)	120 (하동)	82	1	30 (남해)	30 (남해)	30	1

○ (검토결과) 개정안 적용 시 **전국 최저 요금 적용으로 수익률 저하**

- 연회원 이용료 5만원은 파크골프장 유료화 시군 중 전국 최저 이용료임.
- 현재 전국 최저 연회원 이용료 5만원을 적용하고 있는 **밀양의 경우 연회원 감면 규정 없음**

※ [연회원 + 연령 감면] 개정안 적용 시 창원이 전국 최저 이용료를 적용하게 됨. (단위 : 원)

구 분	연회원 일일이용료(연회원 이용료 ÷ 250일)			(현행) 일일회원 연간 사용료
	(현행)100,000원	(개정안)50,000원	(감면시)25,000원	(2,000원×250일 =500,000원)
일일 이용료	400	200	100	2,000원

5. (제7조 · 별표2) 단체이용료 감면 ▸ (일부수용) 8만원

○ (개 정 안) 단체 이용료 하향 조정

- (현행) 120,000원 → (박승엽 안) **60,000**원 (현행대비 50%)
  (백승규 안) **80,000**원 (현행대비 67%)

○ (검토결과)

- 전체 수익 중 단체 이용료 비중 9%로 낮아, 하향 조정에 따른 수익률 감소 상대적으로 적음.
- 주 이용층인 단체 이용객 활성화 위해 이용료 하향 조정 적용

(단위 : 천원)

구 분	7월	8월	(예상)연간수익 (일평균 수익×250일)	(예상)총수익	감소율 (현행 총수익 대비)
단체수/인원	50/1,920	45/1,800	-	-	-
현행	6,000	5,400	77,193	829,874	–
박승엽(안)	3,000	2,700	38,596	791,277	5%
백승규(안)	4,020	3,618	51,719	804,400	3%

6. (제7조) 무료시설 운영 ▸ (수용)소규모(9홀) 및 시설 미흡 구장 무료

○ (개 정 안) 9홀(풍호 · 광석골 · 가포) 및 시설미흡 구장(장천) 무료 운영

현행 조례	개정(안)	
	박승엽 의원(안)	백승규 의원(안)
9개 구장 전체 단계별 유료화	1. 9홀 소규모 구장 이용료 무료 2.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미흡 구장 이용료 무료	–

○ (검토결과)

- 구장별 규모 차이(최대 90홀, 최소 9홀) 미고려, 전 구장 동일 이용료 유료화 시행에 따른 형평성 문제 지속 제기
- 소규모(9홀 이하) 및 시설 개선에도 불구 이용객 안전 미확보 등 유료화 부적합 구장 무료 이용 검토 적정

※ **(무료화 대상)** 4개 구장 : 9홀 3개소(풍호 · 광석골 · 가포) + 시설미흡 1개소(장천)

7. (제11조 · 별표3) 감면 연령 하향 조정 ▸ (일부수용) 65세 이상

○ (개 정 안) 감면 연령 하향 조정

현행 조례	개정(안)	
	박승엽(안)	백승규(안)
70세 이상 → 50%감면	65세 이상 → 50%감면	· 65세 이상 → 50%감면 · 75세 이상 → 면제(100%감면)

○ (타 시군 사례) 전국 유료화 시군 59개소 중 41개·경남도 6개 시군 65세 이상 감면 적용

구분	합계	연령 감면 시군수					연령 감면없는 시군수
		(감면)65세이상	(감면)70세이상	(감면)65세이상 +(면제)70세이상	(감면)65세이상 +(면제)75세이상	(감면)65세이상 +(면제)80세이상	
전국	59	38	3	1	2	1	18
경남	10	3	3	1	–	–	4

○ (검토결과) 65세 이상 감면 적용

- 전국 유료화 시군 중 다수 시군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경로우대 감면 적용
- 조례 개정 시 전국 평균 수준의 연령 감면 적용 수용 가능(70세 이상 → 65세 이상)
- 75세 이상 전액 면제는 전국적 사례 부족으로 불수용

8. (제14조) 관리 · 운영 위탁 ▸ (불수용) 현행유지

○ (개 정 안) 공유재산 위탁 가능 기관·단체에 창원시파크골프협회 추가

현행 조례	개정(안)	
	박승엽(안)	백승규(안)
(공유재산) 창원시설공단 또는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관리위탁	–	(공유재산) 창원시설공단 또는 **창원시파크골프협회 등**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 (검토결과) 조례 규정만으로 **특정 단체 공유재산 관리위탁 불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규정에 따라 지자체장이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탁 가능
-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 **일반입찰 원칙**, 예외적 법령(법률·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조례 규정으로 불가)

9. (부칙) 시행 시기 ▸ (신설) 연회원 이용료 : 2026. 7. 5.

단체이용료 · 감면연령 등 : 2026. 1. 1.

○ (개 정 안) 개정 후 시행 즉시 또는 3개월 유예 조항

현행 조례	개정(안)	
	박승엽 의원(안)	백승규 의원(안)
–	공포 후 즉시 시행	공포 후 3개월 유예

○ (검토결과) 개정 항목에 따라 시행 시기 달리 적용

- 연회원 이용료 ▸ 2026. 7. 5. 이후 시행
  - 2025. 7. 5.부터 현행 조례에 따라 연회원 10만원을 부과·선납하여 운영 중에 있어 이용료 개정(안) 시행 시 대규모 환급사태 발생 (※ 9. 1. 현재 연회원 2,428명)
  - 이용료 반환에 따른 예산확보 및 이용기간 연장 등을 통해 환급사태 대비 시간 필요
- 기타 단체이용료, 감면연령, 휴장일, 운영시간 등 ▸ 2026. 1. 1. 이후 시행

5 향후 계획

○ 의원발의 조례안 상정 및 심의 : 2025. 10월 임시회

붙임 1 이용객 현황 및 수익률 분석(총수입/총지출 비율)

□ 이용객 현황(2025. 7. 5. ~ 8. 31.)

(단위 : 일, 명)

구분		계	대산면(단체포함)	북면	호계	용원	소사
7월 (7. 5.~31.)	운영일수	-	20	20	22	22	19
	총합계	30,439	20,610	893	4,233	2,530	2,173
	일평균	1,508	1,041	45	192	115	114
8월 (8. 1.~31.)	운영일수	-	27	27	27	26	27
	총합계	42,235	27,911	1,854	5,599	2,563	4,308
	일평균	1,564	1,034	69	207	99	160

□ 수익률 분석(2025. 7. 5. ~ 8. 31.)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상수익			총지출				수익률(%)
	계	연회원 (4,000명)	일+단체	계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수익/지출
합 계	829,874	285,585	544,289	3,834,720	693,429	836,901	2,304,390	22%
대산/북면	670,857	285,585	385,272	2,133,987	420,546	568,211	1,145,230	31%
호계	76,677	-	76,677	1,362,974	112,404	150,570	1,100,000	6%
용원	41,490	-	41,490	163,842	101,232	62,610	-	25%
소사	40,850	-	40,850	173,917	59,247	55,510	59,160	23%

연회원 (5만원) (65세↑)감면	계	연회원 (50%)	일+단체 (80%)	계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예상 수익률
합계	578,224	142,793	435,431	3,834,720	693,429	836,901	2,304,390	15%

※ (작성기준)

1. 2025. 7. 5. ~ 8. 31. 유료화 시행 구장 수익 및 예산액(지출액)만 산정, 무료 구장 제외
2. 2025. 7. ~ 8. 2개월 연회원 가입자 2,428명, 연간 연회원 인원 4,000명 기준
3. 2025. 7. ~ 8. 이용료를 각 구장별 운영일수로 나누어 일일이용료 산출하고, 연간 운영 가능 일수(250일)을 곱하여 산정

□ 신규 조성 구장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합계	2024까지	2025	2026 이후
합 계	81홀	-	**10,520,000**	520,000	520,000	9,480,000
덕산 (덕산조차장)	36홀 (48,000㎡)	`23. 03. ~ `28. 12.	**4,000,000**	200,000		3,800,000
우산동	9홀 (9,000㎡)	`23. 3. ~ `26. 12.	**1,420,000**	120,000	100,000	1,200,000
인곡리	27홀 (30,000㎡)	'25. ~	**4,500,000**		20,000	4,480,000
장천장애인	9홀 (4,990㎡)	'23. 07. ~ '25. 12.	**600,000**	200,000	400,000	

붙임 2 연·월회원 이용료 도입 파크골프장 운영 현황

(단위 : 원)

지자체명	연회원 이용료	월회원 이용료	노인 감면 규정			지역
			연령	감면	비고	
밀양	50,000				노인감면 규정 ×	경남
함안	60,000				노인감면 규정 ×	경남
합천	60,000		70		관내:전면감액/관외:50%	경남
양산	70,000		65	50%	연회원 감면 적용 ×	경남
임실	80,000	20,000	65	50%	연회원 감면 적용 ×	전북
정읍	80,000	20,000	65	50%	연회원 감면 적용 ×	전북
사천	80,000		70	50%	연회원 감면 적용 ×	경남
포항	90,000	10,000	65	50%		경북
영천	90,000				노인감면 규정 ×	경북
익산	100,000	20,000	65	50%	연회원 감면 적용 ×	전북
창원	100,000		70	50%		경남
고령	100,000		65/75		75:전액감면/65:50%감면	경북
의성	100,000		65		65:50,000	경북
거창	120,000		65	30%		경남
하동	120,000				노인감면 규정 ×	경남
청도	120,000		65	50%		경북
경산	200,000		65	50%	관내이용자만 50% 감면	경북
광주광역시 광산구	200,000		65/80	50%	80:전액감면/65:50%감면	광주
구미시	300,000	60,000	65	50%		경북
서천	320,000	50,000	65	50%	관내이용자만 50% 감면	충남
세종	350,000	50,000	65	50%		세종
남해		30,000				경남
광주광역시 남구		40,000	65	20%		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40,000	65	30%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40,000	65	50%		광주
광주광역시		40,000	65	50%		광주
인천광역시		44,000	65	50%		인천
고양		45,000	65	50%		경기
파주		45,000	65	50%		경기
아산		45,000	65	70%		충남
양양		50,000	65	50%		강원
가평		90,000	65	30%		경기
김제		100,000				전북
평균이용료	**132,857**	**44,158**				

붙 임 **집행기관 검토안**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창원시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크골프장”이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연회원”이란 1년 단위의 회원으로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파크골프장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휴장일) ① 파크골프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을 개장할 수 있다.

1. 매주 수요일(다만,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파크골프장의 개보수, 점검 또는 잔디 보호가 필요한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체육 관련 경기나 행사의 준비 또는 개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창원시체육회 또는 창원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 관련 경기나 행사의 준비 또는 개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장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① 파크골프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하계(4월 ~ 9월): 6:00 ~ 19:00
2. 동계(10월 ~ 3월): 7:00 ~ 17:00

② 시장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파크골프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오전: 파크골프장 운영 시작시간부터 12시까지
2. 오후: 13시부터 파크골프장 운영 종료시간까지

④ 파크골프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오전 또는 오후 중에서 어느 하나만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 신청) ①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이 발행하는 입장권을 구매하거나 연회원으로 가입하여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연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파크골프장 연회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입한 연회원은 별표 1에 따른 파크골프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① 파크골프장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파크골프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1. 규모가 9홀 이하인 파크골프장
2. 장천파크골프장

제8조(이용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이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용자에게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이용자에 우선해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창원시체육회 또는 창원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각종 훈련, 체육경기 및 행사

제9조(이용자의 시설물 및 설비)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용기간 내 시설물 등의 설치 및 철거를 완료해야 한다.

제10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파크골프장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이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

4. 파크골프장을 독점하여 이용하거나 영리 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6. 제8조제2항에 따라 파크골프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

7. 파크골프장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연회원 이용자에 대하여 일부 파크골프장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파크골프장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취사·음주 행위를 하였거나 한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파크골프장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과 그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감면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④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용료 납부 시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이용 시작 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2. 연회원이 이용 중에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취소 신청한 월을 제외하고 월 단위로 계산. 이 경우 십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3. 파크골프장 일일 이용자가 이용 시작 중에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미반환

제13조(파크골프장의 관리) ① 시장은 파크골프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파크골프장의 규모에 맞게 질서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③ 질서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파크골프장 내 이용자의 경기질서 유지 및 주차장 교통질서 계도

2. 회원 가입 및 일일 이용권 부착 여부 확인

3. 시설물 안전점검 등

④ 제2항에 따른 질서관리요원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파크골프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유재산에 설치된 파크골프장: 창원시설공단

2. 공유재산에 설치된 파크골프장: 창원시설공단 또는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제15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파크골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② 시장은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운영 규정) 파크골프장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997호, 2024.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는 시행일부터 1년간 유예한다.

부 칙 <조례 제2146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18호, 2025.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파크골프장 이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5일부터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 및 단체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파크골프장의 시설 환경 및 이용자 현황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파크골프장별로 2026년 6월 30일까지 그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 조례 제2218호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 파크골프장별 이용료 적용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
2.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별표 2의 연회원 이용료의 감경: 2026년 7월 5일

제2조(파크골프장 단체 이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파크골프장의 이용을 신청하는 단체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내고 파크골프장별로 가입한 연회원은 이 조례에 따른 연회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원으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납부한 연회원 이용료 중 감경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액은 해당 월의 다음 월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되, 십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개정 2025. 7. 1.>

창원시 파크골프장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연번	명 칭	규모	위 치
1	대산면 파크골프장	90홀	의창구 대산면 북부리 195-3
2	북면장애인 파크골프장	18홀	의창구 북면 외산리 42-2
3	풍호파크골프장	9홀	진해구 풍호동 18-14
4	장천파크골프장	18홀	진해구 장천동 산 1-300
5	광석골파크골프장	9홀	진해구 장천동 21번지 (진해드림파크 내)
6	용원파크골프장	18홀	진해구 용원동 1335번지, 1347-7번지
7	가포파크골프장	9홀	마산합포구 가포동 668
8	호계파크골프장	18홀	마산회원구 호계리 503
9	소사파크골프장	18홀	진해구 소사동 55-4

■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개정 2025. 7. 1.>

파크골프장 이용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일일 이용자	연회원	단 체
관내	2,000	100,000	80,000
관외	5,000	-	200,000

1. “일일 이용자”란 매표소에서 발행하는 일일 입장권을 구매하여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관내·관외 일일 이용자의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관내 일일 이용자: 주민등록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경우
   나. 관외 일일 이용자: 주민등록상 창원시 외에 주소를 둔 경우

2.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파크골프장을 함께 이용하려는 40명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단체는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시간 내에서 1회당 9홀을 3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관내·관외 단체의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관내 단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창원시에 소재지를 둔 법인·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2) 1) 외의 경우로서 단체의 구성원 중 80퍼센트 이상이 주민등록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인 경우
   나. 관외 단체: 가목 외의 법인·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3] <개정 2025. 7. 1.>

이용료의 감면(제11조 관련)

구 분	비고
전액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창원시체육회 또는 창원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가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50퍼센트 감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창원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65세 이상 경로자	

■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서식] <개정 2025. 7. 1.>

창원시 파크골프장 연회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세 부 내 용	이용기간		
	감면신청사유		
납부금액	금 원	납부확인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파크골프장 연회원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사실 증명 서류(감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창원시 파크골프장 연회원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연회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민감정보(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등 여부) 그 밖에 별도로 정하여 제출한 사항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연회원 스티커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아용은 1일당 오전 또는 오후 중에서 1회로 제한합니다.
2. 연회원 스티커 분실 시에는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3. 파크골프장 시설 공사, 자연재해 등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파크골프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파크골프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검토	→	통지
신청인		창원시		창원시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

붙임 3 **신·구조문 대비표(집행기관 검토안)**

현 행	검 토 안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휴장일) ① 파크골프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제4조(휴장일)** ① 파크골프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을 개장할 수 있다.
1. 매주 수요일(다만,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1. (현행과 같음)
2.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현행과 같음)
가. 파크골프장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가. 파크골프장의 개보수, 점검 또는 잔디 보호가 필요한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현행과 같음)
다. 그 밖에 시장이 행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체육 관련 경기나 행사의 준비 또는 개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 행	검 토 안
<신 설>	라. 창원시체육회 또는 창원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 관련 경기나 행사의 준비 또는 개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장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① 파크골프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5조(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① (현행과 같음)
1. 하계(4월 ~ 10월): 6:00 ~ 18:00	1. 하계(4월 ~ 9월): 6:00 ~ 19:00
2. 동계(11월 ~ 3월): 7:00 ~ 17:00	2. 동계(10월 ~ 3월): 7:00 ~ 17:00
② 시장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파크골프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검 토 안
1. 오전: 파크골프장 운영 시작시간부터 12시까지	1. (현행과 같음)
2. 오후: 13시부터 파크골프장 운영 종료시간까지	2. (현행과 같음)
④ 파크골프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오전 또는 오후 중에서 어느 하나만 이용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이용 신청) ①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이 발행하는 입장권을 구매하거나 연회원으로 가입하여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 신청 및 이용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연회원 이용자는 별지 서식의 파크골프장 연회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연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파크골프장 연회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가입한 연회원은 별표 1에 따른 파크골프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파크골프장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이용료)** ① 파크골프장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현 행	검 토 안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파크골프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1. 규모가 9홀 이하인 파크골프장 2. 장천파크골프장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하 생략>
제10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1. (현행과 같음)
2. 파크골프장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2. (현행과 같음)
3. 이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	3. (현행과 같음)
4. 파크골프장을 독점하여 이용하거나 영리 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현행과 같음)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5. (현행과 같음)

현 행	검 토 안
6. 제8조제2항에 따라 파크골프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파크골프장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연회원 이용자에 대하여 일부 파크골프장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파크골프장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1. (현행과 같음)
2.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현행과 같음)
3. 취사·음주 행위를 하였거나 한 사람	3. (현행과 같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현행과 같음)
5.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현행과 같음)

현 행	검 토 안
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6. (현행과 같음)
	부 칙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 조례 제2218호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 파크골프장별 이용료 적용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 2.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별표 2의 연회원 이용료의 감경: 2026년 7월 5일
<신 설>	제2조(파크골프장 단체 이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파크골프장의 이용을 신청하는 단체부터 적용한다.

현 행	검 토 안
<신 설>	제3조(연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내고 파크골프장별로 가입한 연회원은 이 조례에 따른 연회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원으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납부한 연회원 이용료 중 감경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액은 해당 월의 다음 월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되, 십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생 략) 2. 연회원이 이용 중에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취소 신청한 **월을 제외하고 월 단위로 계산. 이 경우 십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3. (생 략)

현 행

■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개정 2025. 7. 1.>

파크골프장 이용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일일 이용자	연회원	단 체
관내	2,000	100,000	120,000
관외	5,000	-	200,000
(생 략)			

■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3] <개정 2025. 7. 1.>

이용료의 감면(제11조 관련)

구 분	비고
50퍼센트 감면	
(생 략)	
70세 이상 경로자	

검 토 안

■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개정 2025. . .>

파크골프장 이용료(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일일 이용자	연회원	단 체
관내	2,000	(현행과 같음)	80,000
관외	5,000	-	200,000
(생 략)			

■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3] <개정 2025. . .>

이용료의 감면(제11조 관련)

구 분	비고
50퍼센트 감경	
(생 략)	
65세 이상 경로자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박승엽 의원 발의안, 집행기관 검토안)**

현 행	의 원 발 의 안	검 토 안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휴장일) ① 파크골프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휴장일)** ① (현행과 같음)	**제4조(휴장일)** ① 파크골프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을 개장할 수 있다.
1. 매주 수요일(다만,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2.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파크골프장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가. 파크골프장의 잔디 보호,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가. 파크골프장의 개보수, 점검 또는 잔디 보호가 필요한 경우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그 밖에 시장이 행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현행과 같음)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체육 관련 경기나 행사의 준비 또는 개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 행	의 원 발 의 안	검 토 안
	<신 설>	라. 창원시체육회 또는 창원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 관련 경기나 행사의 준비 또는 개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창원, 마산, 진해 구장별로 정기휴무일을 달리 한다.	<삭 제>
제5조(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① 파크골프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5조(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①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① (현행과 같음)
1. 하계(4월 ~ 10월): 6:00 ~ 18:00	1. 하계(4월 ~ 9월): 6:00 ~ 19:00	1. (의원발의안과 같음)
2. 동계(11월 ~ 3월): 7:00 ~ 17:00	2. 동계(10월 ~ 3월): 7:00 ~ 17:00	2. (의원발의안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이용 신청) ①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이 발행하는 입장권을 구매하거나 연회원으로 가입하여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 신청 및 이용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제6조(이용 신청 및 이용 범위)**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의 원 발 의 안	검 토 안
② 연회원 이용자는 별지 서식의 파크골프장 연회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연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파크골프장 연회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원발의안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가입한 연회원은 별표 1에 따른 파크골프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③ (의원발의안과 같음)
제7조(이용료) 파크골프장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이용료)** ① 파크골프장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이용료)** ① (의원발의안과 같음)
<신 설>	② 9홀 이하 구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파크골프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1. 규모가 9홀 이하인 파크골프장 2. 장천파크골프장
<신 설>	③ 시설이 미흡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구장은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로 이동>
제10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제10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파크골프장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연회원 이용자에 대하여 일부 파크골프장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의원발의안과 같음)

현 행	의 원 발 의 안	검 토 안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8. (의원발의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신설>	1.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 조례 제2218호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 파크골프장별 이용료 적용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
		2.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별표 2의 연회원 이용료의 감경: 2026년 7월 5일
	<신 설>	제2조(파크골프장 단체 이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파크골프장의 이용을 신청하는 단체부터 적용한다.

<table>
<tr><th>현 행</th><th>의 원 발 의 안</th><th>검 토 안</th></tr>
<tr><td></td><td>제2조(연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내고 파크골프장별로 가입한 연회원은 이 조례에 따른 연회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원은 경우, 기 납부한 금액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하며 환불 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td><td>제3조(연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의원발의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연회원으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납부한 연회원 이용료 중 감경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액은 해당 월의 다음 월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되, 십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td></tr>
<tr><td>■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개정 2025. 7. 1.>

파크골프장 이용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table><tr><th>구 분</th><th>일일 이용자</th><th>연회원</th><th>단 체</th></tr><tr><td>관내</td><td>2,000</td><td>100,000</td><td>120,000</td></tr><tr><td>관외</td><td>5,000</td><td>-</td><td>200,000</td></tr><tr><td colspan="4">(생 략)</td></tr></table></td><td>■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개정 2025. . .>

파크골프장 이용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table><tr><th>구 분</th><th>일일 이용자</th><th>연회원</th><th>단 체</th></tr><tr><td>관내</td><td>2,000</td><td>50,000</td><td>60,000</td></tr><tr><td>관외</td><td>5,000</td><td>-</td><td>200,000</td></tr><tr><td colspan="4">(생 략)</td></tr></table></td><td>■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개정 2025. . .>

파크골프장 이용료(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table><tr><th>구 분</th><th>일일 이용자</th><th>연회원</th><th>단 체</th></tr><tr><td>관내</td><td>2,000</td><td>(현행과 같음)</td><td>80,000</td></tr><tr><td>관외</td><td>5,000</td><td>-</td><td>200,000</td></tr><tr><td colspan="4">(생 략)</td></tr></table></td></tr>
</table>

<table>
<tr><th>현 행</th><th>의 원 발 의 안</th><th>검 토 안</th></tr>
<tr>
<td>■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3]
<개정 2025. 7. 1.>

이용료의 감면(제11조 관련)
<table><tr><th>구 분</th><th>비고</th></tr><tr><td colspan="2">50퍼센트 감면</td></tr><tr><td>(생 략)</td><td></td></tr><tr><td>70세 이상 경로자</td><td></td></tr></table></td>
<td>■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3]
<개정 2025. . .>

이용료의 감면(제11조 관련)
<table><tr><th>구 분</th><th>비고</th></tr><tr><td colspan="2">50퍼센트 감면</td></tr><tr><td>(생 략)</td><td></td></tr><tr><td>65세 이상 경로자</td><td></td></tr></table></td>
<td>■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3]
<개정 2025. . .>

이용료의 감면(제11조 관련)
<table><tr><th>구 분</th><th>비고</th></tr><tr><td colspan="2">50퍼센트 감경</td></tr><tr><td>(생 략)</td><td></td></tr><tr><td>(의원발의안과 같음)</td><td></td></tr></table></td>
</tr>
</table>

붙 임 **비용추계서**

■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31.>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비용발생요인

○ 창원시 파크골프장 연회원·단체 이용료 감면 등에 따른 세입 감소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유료화 시행 파크골프장 : 5개소

○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현행 조례	박승엽 의원(안)	백승규 의원(안)
연회원 이용료	100,000원	50,000원	50,000원
단체 이용료	120,000원	60,000원	80,000원
감면연령(50%)	70세 이상	65세 이상	65세 이상→50%감면 75세 이상→전액면제

○ 현행 조례 기준 수익률 분석(2025. 7. 5. ~ 8. 31.)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상수익			총지출				수익률(%) (수익/지출
	계	연회원 (4,000명)	일+단체	계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합 계	**829,874**	**285,585**	**544,289**	**3,834,720**	693,429	836,901	2,304,390	**22%**
대산/북면	670,857	285,585	385,272	2,133,987	420,546	568,211	1,145,230	31%
호계	76,677	-	76,677	1,362,974	112,404	150,570	1,100,000	6%
용원	41,490	-	41,490	163,842	101,232	62,610	-	25%
소사	40,850	-	40,850	173,917	59,247	55,510	59,160	23%

나. 추계 결과(2025년 기준)

○ 박승엽 의원(안)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상수익			총지출				수익률(%) (수익/지출
	계	연회원 (4,000명)	일+단체	계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계	**643,402**	**119,946**	**523,456**	**3,834,720**	693,429	836,901	2,304,390	**17%**

○ 백승규 의원(안)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상수익			총지출				수익률(%) (수익/지출
	계	연회원 (4,000명)	일+단체	계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계	**636,205**	**105,666**	**530,539**	**3,834,720**	693,429	836,901	2,304,390	**17%**

※ (작성기준) 현행 대비 연회원 이용료 감소 비율 적용

1. 2025. 9. 1. 기준 대산면파크골프장 연회원 현황

연령대	64세 미만	65~69	70~74	75세 이상	계
인원(명) (비율%)	782 (27.55%)	692 (24.38%)	940 (33.12%)	424 (14.94%)	2,838

1-1. 현행 기준 연회원 이용료 수입

구분	일반이용객	감면이용객	면제이용객	계	이용료 감소 비율
인원(명)	1,474	1,364	-	2,838	
수익(천원)	147,400	68,200	-	215,600	0%

1-2. 박승엽 의원(안) 기준 연회원 이용료 수입

구분	일반이용객	감면이용객	면제이용객	계	이용료 감소 비율
인원(명)	782	2,056	-	2,838	
수익(천원)	39,100	51,400	-	90,500	-58%

1-3. 백승규 의원(안) 기준 연회원 이용료 수입

구분	일반이용객	감면이용객	면제이용객	계	이용료 감소 비율
인원(명)	782	1,632	424	2,838	
수익(천원)	39,100	40,800	-	79,900	-63%

2. 단체이용료 감면 적용

구 분	7월	8월	(예상)연간수익 (일평균 수익×250일)	(예상)총수익	감소율 (현행 총수익 대비)
단체수/인원	50/1,920	45/1,800	-	-	-
현행	6,000	5,400	77,193	829,874	–
박승엽(안)	3,000	2,700	38,596	791,277	5%
백승규(안)	4,020	3,618	51,719	804,400	3%

다. 재원조달방안 : 파크골프장 운영 수익금, 시비 / 위탁관리운영

3.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장 김영철

"희망찬 미래를 여는 창원특례시의회"

창 원 시 의 회

수신 창원시장(정책기획관)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관련 검토의견 조회 송부(박승엽 의원)

지방자치법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관련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5. 9. 30.(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의사항: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저촉 여부, 재정 부담 등
○ 조례안 개요

조 례 안	발 의 자	상 정 시 기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승엽 의원	제1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붙임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창원시의회의장

정책지원관	김주연	입법지원팀장	장설민	의사기록팀장	반혜정	수석전문위원	출장
의정담당관	대결 2025. 9. 19. 황보성	사무국장	전결				

협조자

시행 의사입법담당관-6163 (2025. 9. 19.) 접수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용호동) / http://www.changwon.go.kr
전화번호 055-225-5375 팩스번호 055-225-4743 / jy0810@korea.kr / 대국민 공개

붙 임 **검토의견 조회안**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승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5. . .

발 의 의 원 : 박승엽 의원

찬 성 의 원 :

1. 제안이유

○ 창원시 파크골프장 전 구장 유료화로 소규모(9홀 이하) 및 시설 상태가 미흡한 구장에도 동일 요금이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소규모 또는 시설 미흡 구장에는 요금을 무료로 전환하고자 함.

○ 휴장일을 설날·추석 당일로 수정하고 구장별로 휴장일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며, 감면 나이 하향 조정, 하절기 운영시간 연장, 연회비 1회 납부로 모든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파크골프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휴장일을 설날·추석 연휴 당일로 수정하고 지역구 구장별로 휴장일을 달리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

나. 하절기 운영 시간을 18시에서 19시로 연장함(안 제5조)

다. 연회비 납부회원의 파크골프장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

라. 연회원 이용자에 대한 이용 및 입장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0조)

마. 연회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바. 연회원 회비와 단체이용료를 수정함(안 별표 2)

사. 감면 연령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신·구별표대비표

다. 관계 법령

라. 현행 조례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연휴”를 “당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개수”를 “잔디 보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창원, 마산, 진해 구장별로 정기휴무일을 달리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10월)”을 “9월)”로, “18:00”을 “19:0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1월”을 “10월”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이용 신청)”을 “(이용 신청 및 이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회원 이용자는”을 “연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입한 연회원은 별표 1에 따른 파크골프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9홀 이하 구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③ 시설이 미흡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구장은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입장 및 이용의 제한)”을 “(이용 및 입장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파크골프장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연회원 이용자에 대하여 일부 파크골프장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내고 파크골프장별로 가입한 연회원은 이 조례에 따른 연회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원의 경우, 기 납부한 금액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하며 환불 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파크골프장 이용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일일 이용자	연회원	단 체
관내	2,000	50,000	60,000
관외	5,000	-	200,000

1. “일일 이용자”란 매표소에서 발행하는 일일 입장권을 구매하여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관내·관외 일일 이용자의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관내 일일 이용자: 주민등록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경우
   나. 관외 일일 이용자: 주민등록상 창원시 외에 주소를 둔 경우

2.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파크골프장을 함께 이용하려는 40명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단체는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시간 내에서 1회당 9홀을 3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관내·관외 단체의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관내 단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창원시에 소재지를 둔 법인·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2) 1) 외의 경우로서 단체의 구성원 중 80퍼센트 이상이 주민등록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인 경우
   나. 관외 단체: 가목 외의 법인·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3]

이용료의 감면(제11조 관련)

구 분		비고
전액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창원시체육회 또는 창원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가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50퍼센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창원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65세 이상 경로자	

참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휴장일) ① 파크골프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파크골프장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나.·다.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4조(휴장일) ① ----------. 1. (현행과 같음) 2. ---------- 당일 3. ---------- 가. --------- 잔디 보호---------- 나.·다.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창원, 마산, 진해 구장별로 정기휴무일을 달리 한다.
제5조(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① 파크골프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하계(4월 ~ 10월): 6:00 ~ 18:00 2. 동계(11월 ~ 3월): 7:00 ~ 17:00 ② ~ ④ (생 략)	제5조(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① ----------. 1. -------- 9월)-------- 19:00 2. ---10월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이용 신청) ① (생 략) ② 연회원 이용자는 별지 서식의 파크골프장 연회원 신청서를 시장	제6조(이용 신청 및 이용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연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

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 ③ 제2항에 따라 가입한 연회원은 별표 1에 따른 파크골프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생 략) <신 설> <신 설>	제7조(이용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9홀 이하 구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③ 시설이 미흡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구장은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
제10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② (생 략)	제10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① ---------- 1. ~ 6. (현행과 같음) 7. 파크골프장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연회원 이용자에 대하여 일부 파크골프장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참 고

신 · 구별표대비표

현 행

■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파크골프장 이용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일일 이용자	연회원	단 체
관내	2,000	100,000	120,000
관외	5,000	-	200,000

1. "일일 이용자"란 매표소에서 발행하는 일일 입장권을 구매하여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관내·관외 일일 이용자의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관내 일일 이용자: 주민등록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경우
   나. 관외 일일 이용자: 주민등록상 창원시 외에 주소를 둔 경우

2.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파크골프장을 함께 이용하려는 40명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단체는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시간 내에서 1회당 9홀을 3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관내·관외 단체의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관내 단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창원시에 소재지를 둔 법인·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2) 1) 외의 경우로서 단체의 구성원 중 80퍼센트 이상이 주민등록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인 경우
   나. 관외 단체: 가목 외의 법인·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3]

이용료의 감면(제11조 관련)

구 분	비고
전액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창원시체육회 또는 창원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가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50퍼센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창원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70세 이상 경로자	

개 정 안

■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파크골프장 이용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일일 이용자	연회원	단 체
관내	2,000	50,000	60,000
관외	5,000	-	200,000

1. "일일 이용자"란 매표소에서 발행하는 일일 입장권을 구매하여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관내·관외 일일 이용자의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관내 일일 이용자: 주민등록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경우
   나. 관외 일일 이용자: 주민등록상 창원시 외에 주소를 둔 경우

2.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파크골프장을 함께 이용하려는 40명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단체는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시간 내에서 1회당 9홀을 3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관내·관외 단체의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관내 단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창원시에 소재지를 둔 법인·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2) 1) 외의 경우로서 단체의 구성원 중 80퍼센트 이상이 주민등록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인 경우
   나. 관외 단체: 가목 외의 법인·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3]

이용료의 감면(제11조 관련)

구 분	비고
전액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창원시체육회 또는 창원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가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50퍼센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창원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65세 이상 경로자	